취업규칙

| 제정 1983.12.26 규정 | 제 7호 | 2006. 1. 9 규정 기 | 제515호 | 2017.12.29 🛪 | 구정 | 제921호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|
| 개정 1988. 1.14 규정 | 제 60호 | 2006. 6. 8 규정 🤊 | 제561호 | 2018. 4. 3 7 | 구정 | 제923호 |
| 1990. 6. 1 규정 | 제 94호 | 2007. 4.11 규정 🤊 | 제575호 | 2018. 6.21 T | 구정 | 제933호 |
| 1993.11. 9 규정 | 제141호 | 2007. 6.13 규정 기 | 제582호 | | | |
| 1994. 6.20 규정 | 제166호 | 2008. 2.18 규정 기 | 제603호 | | | |
| 1996. 1. 8 규정 | 제193호 | 2009. 3. 1 규정 🤊 | 제626호 | | | |
| 1996. 7.10 규정 | 제203호 | 2011. 4. 1 규정 🤊 | 제668호 | | | |
| 1997. 8.25 규정 | 제242호 | 2013. 4. 1 규정 🤊 | 제711호 | | | |
| 1999. 8.20 규정 | 제288호 | 2014. 4. 1 규정 🤊 | 제732호 | | | |
| 2001. 4.23 규정 | 제349호 | 2014.12.26 규정 🤊 | 제758호 | | | |
| 2002.12.11 규정 | 제416호 | 2015. 3.31 규정 기 | 제763호 | | | |
| 2004. 1.31 규정 | 제463호 | 2016. 4. 5 규정 🤊 | 제791호 | | | |
| 2005. 1.26 규정 | 제489호 | 2017. 3.10 규정 🤊 | 제846호 | | | |
| 2005. 6.30 규정 | 제502호 | 2017. 4.26 규정 🤊 | 제857호 | | | |
| | | | | | | |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시설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의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취업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"직원" 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와 공무직 직원,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 다.(2005.6.30, 2014.12.26)
- 제4조(신분보장) 직원은 이 규칙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- 제5조(균등대우) 직원은 성별,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.

제2장 복무 제1절 통칙

- 제6조(성실의무) 모든 직원은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7조(복종의 의무)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품위 유지의 의무)**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9조(비밀 엄수의 의무)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**제10조(청렴의 의무)**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제11조(겸직금지)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12조 <삭 제> (2011.4.1)

- 제13조(신상변경신고) 직원은 전적, 전거,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**제14조(피해변상)**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신원보증보험회사 와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14조의2(비상시의 협력) 직원은 재해,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

- **제15조(근무시간)**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, 주 40시간(주5일)을 원칙으로 한다.(2005.1.26)
 - ②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정부지침, 또는 시 조례 등을 준용하되, 시업시간은 오전 9시, 종업시간은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하며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(2005.1.26)
- 제16조(휴식시간) 직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12:00부터 13:00까지 1시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단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- ② 휴식시간은 공단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.
- **제17조(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)** ① 공단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도 연장근무,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
제3절 출근 및 결근

- **제18조(출근 및 결근)** ①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야 한다.('99. 8.20)
 - ②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 전일 종업시간까지 결근계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유계결근으로 한다. 다만, 결근일수가 계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, 병가의 경우 제28조에 따른다. <개정 2018.4.3.> ③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, 전언, 기타 방법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지
 - ③ 신급 물가피안 사유도 사선 세술을 하시 못만 경우에는 선화, 선언, 기타 방법으로 소속 무서상에게 시체없이 보고하고 익일 시업시간 1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

한 경우에는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.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도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.

- **제19조(조퇴 등)** ① 직원이 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4.3.>
 - ② 소속부서의 장은 지각, 조퇴, 외출을 연 3회 이상 할 경우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4.5, 2018.4.3.>
- **제20조(복무상황 정리**<'06.1.9>) 각 부서는 매일 지각, 결근, 병가, 휴가, 출장, 교육 등의 구분에 따라 소속직 원의 복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.('99. 8.20)('06.1.9)
- 제21조(외출허가) ① 직원이 근무시간중 외출하는 때에는 외출부 또는 외출허가원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외출은 구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 - ② 직원이 외출하는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출근시 회행) 업무상 출근 도중 공무로 타처에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 퇴근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본조의 회행은 출근 후 공용 외출로 본다.

제4절 휴일 및 휴가

- 제23조(휴일)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.
 - 1. 주 1일(주휴일)(2005.1.26)
 - 2.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(2005.1.26)
 - 3. 삭제 (2002.12.11)
 - 4. 삭제 (2002.12.11)
 - 5. 근로자의 날
 - 6. 삭제 (2002.12.11)
 - 7.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. 단, 제1호에 의한 주 휴일은 사업장별로 업무형편에 따라 직원 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삭제 <2017.3.10.>
 - ③ 휴일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. (신설 2006.6.8)
- 제24조(법정 휴가) ①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직원에 대하여 생리휴가 및 산전산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(2002.12.11)
 - ② 만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(입양 자녀 포함)를 양육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.(2002.12.11, 2008.2.18, 2009.3.1, 2011.4.1, 2015.3.31.)
- **제25조(연차유급 휴가)** ①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.(2005.1.26, 2013.4.1)
 - ②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.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

25일을 한도로 한다.(2005.1.26)

- ③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 단,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(2001.4.23, 2002.12.11, 2005.1.26, 2013.4.1)
- ④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직원의 청구에 의하여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공단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(2005.1.26)
- ⑤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. 단, 일반직(사회복지직 제외)은 연간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,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사용촉진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(2002.12.11, 2005.1.26, 2013.4.1, 2015.3.31, 2017.12.29, 2018.4.3, 2018.6.21)
- ⑥연차유급휴가는 일일단위,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(14:00기준), 시간단위(1시간 기준)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반일 연차유급휴가는 2회를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.(본항신설 2007.6.13)<개정 2018.4.3.>

제26조(유급휴가) ① 공단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

- 1. 공가
- 2. 병가
- 3. 삭제<2016.4.5.>
- 4. 청원휴가
- 5. 삭제 (2002.12.11)
- 6. 특별휴가(신설 '94. 5.20)
- 7. 유산휴가(신설 '94. 5.20)
- 8. 삭제 (신설 2002.12.11)(삭제 2015.3.31)
- 9. 장기근속특별휴가 (신설 2006.6.8)
- 10. 태아검진휴가 (신설 2006.6.8)(개정 2008.2.18)
- 11. 불임치료휴가 :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 1일(신설 2016.4.5.)
- ②휴가는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제3조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, 부서장은 전월의 복무현황을 익월 5일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(2002.12.11)('06.1.9)
- ③ 병가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만 유급휴가로 인정한다.
- 제26조의2(공로연수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4.3.>
 - 1. 정년도래일 기준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(단, 2012.12.31 현재 일반직 직원은 근속연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)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
 - 2. 정년도래일 기준 10년 이상 20년 이하 근무한 직원 및 명예퇴직직원에 대하여 정년 및 퇴직 잔여기간 1개월 이내의 자
 - ② 제1항에 의거 공로연수를 할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의 직원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정년 및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에서 공단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. 단, 연수방법·연수내용·연수 활동비 지원 등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('06.1.9 신설)(개정 2008.2.18, 2013.4.1, 2015.3.31)

제27조(공가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.

- 1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
- 2. 병역검사, 소집, 검열, 단기비상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('06.1.9 본호개정)
- 3. 공단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연구할 때
- 4. 천재지변, 화재, 수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('97.8.25)
- 5. 공단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 참가시(신설 '97.8.25)
- 6. 방송통신대학에 출석할 때
- 7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(신설 2001.4.23)
- 8.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(연간 1일에 한함) (신설 2014.4.1)

제28조(병가)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180일까지로 한다.('06.1.9)

② 제1항 이외의 동일부상 또는 동일질병으로 인한 누계는 60일로 한다. 다만, 계속 7일 이상 병가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, 6일 이하의 병가시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'06.1.9, 2015.3.31, 2018.4.3.)

제29조 삭제 <2016.4.5.>

- **제30조(청원휴가)** ①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휴가를 줄 수 있다. (각호 개정 2015.3.31, 2018.4.3.)
 - 1. 결혼 : 본인 5일, 자녀 1일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 - 2. 자녀출산 : 5일
 - 3. 입양 : 20일
 - 4.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: 5일
 - 5.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 사망: 3일
 - 6. 자녀, 자녀의 배우자 사망 : 3일
 - 7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: 1일
 - 8.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: 1일
 - 9. 풍해, 수해, 화재 등 피해직원 및 피해지역 봉사직원의 청원휴가 : 5일 이내(본호개정 2016.4.5, 2017.3.10.)
 - ② 천재지변에 의한 휴가일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(2009.3.1)

제31조 삭제 (2002.12.11)

- 제31조의2(특별휴가) 이사장은 공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4.5.>
- 제31조의3(유산휴가) 공단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 준다.
 - 1.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

- 2.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
- 3.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(본조 전면개정 '07.4.11)

제31조의4(공로휴가) 삭제 ('06.1.9 신설)(개정 2008.2.18, 2013.4.1) (삭제 2015.3.31.)

- 제31조의5(장기근속특별휴가) 공단은 10년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장기 근속특별휴가를 재직 중에 부여한다. 다만, 본 규정 개정전에 사용한 장기근속특별휴가를 포함한다(단, 기 간 중 분할사용 가능).(신설 2006.6.8)(개정 2008.2.18, 2009.3.1, 2013.4.1, 2015.3.31)
 - 1. 10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: 10일 (2015.3.31.)
 - 2. 20년이상 30년미만 근속자 : 20일 (2015.3.31.)
 - 3. 30년이상 근속자 : 20일 (2015.3.31.)
- 제31조의6(생리·태아검진 휴가) 공단은 여직원에 대하여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생리·태아검진 휴가를 준다. 다만, 생리로 인한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 (신설 2006.6.8)(개정 2008.2.18)
- 제31조의7(모성보호시간) ① 공단은 임신한 직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.
 - ②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.
 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쌍태아 이상을 임신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임신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2시간을 단축한다.
-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 [전문개정 2017.12.29.]
- 제31조의8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① 공단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직원에 대하여 「남 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. 다만,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 제1항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12.29.]

[종전 제31조의8은 제31조의10으로 이동 <2017.12.29.>]

제31조의9(가족돌봄휴가) 공단은 자녀가 있는 직원이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7.12.29.]

제31조의10(보상휴가) 공단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·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. (본조신설 2013.4.1) [제31조의8에서 이동 <2017.12.29.>]

제5절 출장

- 제32조(출장)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.
- 제33조(출장중지 및 취소)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수명기일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 변경원(취소포함)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34조(목적지 변경)** 출장 중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회행하거나 지정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5(복명서 제출) 출장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.

제6절 당직

- **제36조(당직근무)** ① 공단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, 도난,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.
 - ②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- 제37조(당직구분)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휴일에,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. 제38조(위임규정)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휴직 및 복직

- 제39조(휴직) ①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- ②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- ③ 휴직기간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40조(복직)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해당 직원은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4장 사무인계

- 제41조(사무인계) ①직원이 휴직,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인계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, 비품,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, 금전,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이 입회토록 한다.

제5장 보수 및 승급

제42조(보수)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- 제42조의1(임금피크제) 직원의 정년 전 소정기간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.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본조신설 2016.4.5.>
- 제43조(승급)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6장 퇴직 및 상여

- **제44조(퇴직)** ①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, 정년퇴직, 직권면직, 사망으로 인한 퇴직 및 고용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구분한다.
 - ② 퇴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45조(퇴직금 지급)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.
- 제46조(상여) 상여금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제7장 후생복지

- 제47조(급식 및 피복지급) ① 공단은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또는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48조(의료) 공단은 직원과 그 피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시혜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한다.
- 제 49 조(건강진단) ①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단,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정밀진단을 받게 한다.
 - ② 만3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검진항목 이외에 초음파 검사 등 추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한 다.('97.8.25 신설, 2004.1.31 개정)
 - ③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. 다만, 직원이 사사로 받은 건강진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50조(위임규정)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장 교육훈련

- **제51조(교육훈련)** 공단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훈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교육훈련을 행한다.('06.1.9)
- **제52조(교육훈련시간)** 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훈련은 일과 시간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53조(위임규정)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9장 안전 및 보건

제54조(안전 및 보건<'06.1.9>**)**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.('06.1.9)

제55조 ('06.1.9 삭제)

제10장 재해보상

- 제56조(재해보상) ①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92조 규정을 준용한다.('06.1.9, 개정 '09.3.1)
 - ② 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.('06.1.9, 2015.3.31)

제11장 상벌

제57조(포상과 징계등) 직원의 포상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(이하 "징계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18.4.3.> [제목개정 2018.4.3.]

제12장 보칙

제58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9조(적용제외) 공무직직원,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고용계약 또는 별도 내규에 따른다.(2005.6.30.본조신설, 개정 2014.12.26)

보 치

- ①(시 행 일) 이 규칙은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988.1.14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0.6.1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3.11.9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4.6.20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6.1.8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6.7.10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7.8.25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9. 8. 20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12. 11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의 3의 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1.31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1.26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6.30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②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06. 1. 9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의 2의 규정은 200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6. 8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4. 11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6. 13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2. 18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3. 1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1. 4. 1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4. 1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4. 4. 1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4.12.26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3.31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6.4.5.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7.3.10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7.4.26)(정관 제85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7.12.29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4.3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8.6.2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